직제규정(3-2-1)

최종개정일 : 2019.02.27.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건양학원 정관 및 건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직제는 교육법, 사립학교법, 기타 법령 및 정관으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분장)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제4조(교직원)

① 본 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교원과 직원 등을 둔다.

1.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직급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7.26)
2. 직원은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구분하며, 필요에 따라 연구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3. 제1호의 필요에 따라 비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9.02.27.)

② 제1항에 대한 교직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 할 수 있다.(개정 2011.9.22)
2. 직원은 대학의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를 담당하며, 연구원은 연구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3. 조교는 교육 · 연구 · 행정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③ 교직원의 정원은 정관에 따른다.

2장. 총장·부총장

제5조(총장 등) ① 총장은 본 대학교를 대표하고 교무를 통괄하며,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본 대학교에 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 특정목적을 담당하는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ㆍ부교수 또는 초빙교수로 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9.22., 2013.3.1.,2017.1.11., 2019.02.27.)

③ 부총장은 교무 및 행정에 관한 사항을, 대외협력부총장은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총장을 보좌하고 총장 유고시의 직무대행은 부총장이 하고 부총장이 공석 또는 유고시에는 대외협력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총무처장 순으로 한다. (개정 2007.3.5., 2011.9.22., 2012.9.1., 2013.1.1., 2013.3.1., 2017.1.11., 2018.03.01.)

④ 총장 직속으로 감사실을 두며 부총장 직속으로 교육혁신원(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성과관리센터, 비교과센터)을 대외협력부총장 직속으로 대외협력실(발전기금팀, 홍보팀, 신문방송국)을 둔다.(신설 2012.1.1.)(개정 2014.2.1., 2014.8.1., 2015.4.1., 2015.9.2., 2016.3.1., 2019.01.28.)

제6조(비서실) 비서실에 비서팀을 두며, 총장과 부총장에 관한 비서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7.9.17, 2009.7.1, 2011.6.1, 2012.4.1, 2012.9.1., 2014.2.1., 2015.7.9., 2016.3.1.)

3장. 행정기구

1절. 교육운영실(신설 2016.3.1.)

제7조(교무처) 교무처에 교무팀 논산, 교무팀 대전, 교직부, 교원인사팀을 둔다. (개정 2006.9.6., 2007.3.5., 2007.9.17., 2009.7.1., 2010.3.1., 2010.9.1., 2010.11.1., 2011.3.1., 2011.3.21., 2012.1.1., 2012.4.1., 2012.9.1., 2012.12.1., 2013.1.1., 2013.8.1., 2014.4.17., 2014.8.1., 2015.5.1., 2015.7.1., 2015.9.1., 2015.9.2., 2015.10.1., 2016.3.1., 2016.3.23., 2017.1.11., 2017.4.24., 2017.8.24., 2017.11.01., 2018.03.01., 2018.09.01., 2019.01.28.)

제7조의 2 (삭제 2018.03.01.)

제7조의 3(학생처) 학생처에 학생지원팀 논산, 학생지원팀 대전, 장학팀, 인성관, 장애학생지원센터, 사회봉사센터, 학생상담센터, 양성평등센터, 보건진료소 논산, 보건진료소 대전을 둔다. (신설 2017.8.24., 2017.11.01., 2018.03.01., 2019.01.28.)

제8조 삭제(2017.4.24.)

제9조(평생교육대학) ① 평생교육대학에 평생교육팀을 둔다.(개정 2009.7.1., 2010.11.1., 2014.8.1., 2015.5.1.)
② 평생교육대학내에 건양짐나지움을 둔다.(신설 2011.9.22)

제10조(명곡도서관) 문헌정보팀을 둔다 (개정 2009.7.1., 2014.2.1., 2014.8.1., 2019.01.28)

2절. 교육지원실(신설 2016.3.1.)

제11조(기획처) 기획처에 전략기획팀, 대학성과평가센터 둔다. (개정 2007.3.5, 2007.9.17, 2009.7.1, 2010.9.1, 2010. 11.1, 2011.3.1, 2011.9.22, 2012.9.1., 2013.8.1., 2015.4.15., 2015.5.1., 2015.7.1., 2017.8.24., 2018.03.01., 2018.09.01., 2019.03.13.)

제11조의 2 (삭제 2018.03.01.)

제12조(입학처) 입학처에 입학팀, 입학사정관실을 둔다.(개정 2009.7.1., 2011.6.1., 2012.1.1., 2012.4.1., 2013.4.1., 2014.8.1., 2014.9.1., 2015.2.26., 2015.5.1., 2016.3.1., 2018.03.01.)

제12조의 2(취업처) 취업처에 진로취업센터 둔다.(개정 2018.03.01., 2019.01.28)

제13조(총무처) 총무처에 총무팀 논산, 총무팀 대전, 경리팀, 시설팀 논산, 시설팀 대전, 자산운영팀, 직원인사팀, 출판부, 건양문화콘서트홀, 학생수련관을 둔다.(개정 2009.7.1, 2010.9.1, 2011.3.1, 2012.9.1., 2013.5.1., 2014.8.1., 2015.10.8., 2015.11.9., 2016.3.1., 2016.7.21., 2018.03.01., 2018.09.01.)

제14조(산학취업본부) ① 산학취업본부에 산학협력단을 둔다.(개정 2009.7.1., 2011.3.1., 2012.2.15., 2012.8.1., 2014.2.1., 2014.9.1., 2015.5.1., 2016.3.1.)
② 산학협력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 및 운영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9.7.1., 2011.3.1., 2012.2.15., 2012.8.1., 2014.2.1.)

제15조(정보통신원) 정보통신원에 정보통신팀을 둔다.(개정 2010.11.1., 2013.2.1., 2015.5.1.)

제16조(국제교육원) 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팀, 한국어교육센터를 둔다.(개정 2010.11.1., 2015.5.1., 2017.8.24.)

제17조(인성관) 삭제(2019.01.28.)

3절. 학생군사교육단 등(신설 2016.3.1.)

제17조(학생군사교육단) ① 병역법 제57조 2항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군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생군사교육단을 둔다.

②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9.7.1.)

제18조(예비군연대) 예비군연대를 둔다.(신설 2015.9.2.)

제19조(학교기업) 학교기업에 한나래기업을 둔다. (개정 2009.7.1., 2010.11.26.)

제20조(직위 및 보직) ① 행정기구의 장은 전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과장 이상으로 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01.28., 2019.02.27.)

② 행정기구에 부처(단)장을 둘 수 있으며 전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과장 이상으로 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01.28., 2019.02.27)

③ 행정기구에 팀장은 전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계장 이상으로 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9.7.1.)(개정 2019.01.28., 2019.02.27)

4장. 단과대학(통합개정 2014.8.1.)

제21조(단과대학 구성) ① 논산 창의융합캠퍼스에 재활복지교육대학, 글로벌경영대학, 군사경찰대학, PRIME창의융합대학 및 대학 교양교육 강화를 위한 휴머니티칼리지를 둔다.(개정 2015.4.15., 2016.6.1., 2019.01.28.)

② 대전 메디컬캠퍼스에 의과대학, 간호대학, 의과학대학, 의료공과대학을 둔다.

③ 단과대학 별 학부(과) 편제는 학칙을 따른다.

④ 단과대학 운영을 위한 센터 또는 교육을 전담하는 학부를 둘 수 있다.(개정 2016.9.12., 2019.01.28.)

⑤ 휴머니티칼리지에 인문융합학부, 기초교육학부, 브리꼴레르학부를 둔다.(신설 2019.01.28.)

제21조의 2(단과대학 보직) ① 단과대학에 학장과 학장을 보좌하는 단과대학 교수부장을 둘수 있다.(개정 2019.02.27.)

② 학부(과)에는 학부(과)장을 둘 수 있으며, 학부에는 필요에 의해 전공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개정 2019.01.28., 2019.02.27.)

③ 학장과 단과대학 교수부장, 학부(과)장과 전공주임교수는 전임교원으로 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9.02.27.)

④ 학장과 각 학부(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단과대학과 학부(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개정 2019.02.27.)

⑤ 단과대학별로 업무를 총괄할 행정실(팀)을 두며, 행정실(팀)장은 직원 중에서 보한다.(개정 2019.02.27.)

5장. 대학원

제22조(대학원장) 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개정 2010.3.1)

② 대학원장은 전임교원으로 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3.1., 2019.02.27.)

③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과 학부(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개정 2010.3.1)

④ 각 대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학원 교학팀을 두며, 교학총괄팀장은 전임교원 또는 계장 이상으로 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3.1., 2019.01.28., 2019.02.27)

⑤ (삭제) (삭제 2009.7.1)

6장. 부설연구소 및 센터(개정 2016.3.1.)

제23조(부설연구소 및 센터) ① 대학교에 학생생활상담센터, 예학교육연구원, 명곡의과학연구소, 충남지역문화연구소, 창의력개발연구소, 명곡안연구소, 공학교육혁신센터, 군사과학연구소, 평생교육정책연구소, 세종미래비전연구원, 세계평화공원조성연구소, 이주민사회통합연구소, 미래융합기술연구원, 국방경찰행정연구소, 박범신문학콘텐츠연구소, 가상병원, 양성평등센터, 공공안전연구소, 소프트웨어교육센터, 마음행복연구소를 두며, 센터장 및 연구소(원)의 장은 조교수 이상교원 또는 과장(4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06.9.6., 2007.3.5., 2009.7.1., 2010.3.1., 2012.12.1., 2013.1.1., 2013.4.1.,

2013.8.1., 2014.4.28., 2014.8.1., 2015.8.27., 2015.9.1., 2015.10.1.,2018.01.10., 2018.09.01., 2019.01.28.)

② 연구소(원)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연구소(원)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

7장. 국책사업통합관리본부(신설 2012. 10. 12)(개정 2014.8.1.)

제24조(국책사업통합관리본부) (개정 2014.8.1.)

① 중장기적인 발전과 연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책사업통합관리본부(이하 통합본부)를 설치한다.

1.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지원사업단(ACE사업단)
2. 지방대학특성화지원사업단(CK-1사업단)
3.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LINC사업단)
4.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사업단(고교교육정상화사업단)
5. 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단
6.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단(PRIME사업단)

② 통합본부의 조직 및 구성, 임무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우선하며, 통합본부장은 교무위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

③ 통합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사업단의 사업추진, 성과관리 등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통합본부는 사업단 내에 해당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8장. 기 타

제25조(타 규정 적용) 직제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교내 다른 규정상의 직제명칭은 본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5.7.9.)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24일부터 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16일부터 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2조(인재선발본부), 제23조(단과대학 구성)제2항 의료공과대학 대전 이전은 2015년도부터 적용 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규정에 따른 장, 절, 조 변경은 다음과 같다.
   - ○ 장 변경 및 신설 : 7장(부설연구소 및 센터) → 6장, 8장(국책사업통합관리본부) → 7장, 8장(기타) 신설
   - ○ 절 신설 : 3장 1절(교육운영실), 2절(교육지원실), 3절(학생군사 교육단 등)
   - ○ 조 변경 : 비서실(제16조→제6조), 평생교육대학(제13조→제9조), 명곡도서관(제17조→제10조), 기획조정실(제6조→제11조), 입학 · 취업지원처(제10조→제12조), 총무처(제11조→제13조), 산학취업본부(제12조→제14조), 국제교육원(제14조→제16조), 학생군사교육단(제19조→제17조), 예비군연대(제20조→제18조), 학교기업(제21조→제19조), 직위 및 보직(제22조→제20조), 단과대학 구성(제24조→제21조), 단과대학 운영(제24조의 2→제21조의 2), 대학원장(제25조→제22조), 부설연구소 및 센터(제27조→제23조), 국책사업통합관리본부(제28조→제24조), 제23조(타 규정 적용)→제25조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0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0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03월 13일부터 시행한다.